

# I. 序論

1996년 10월 11일 우리나라의 OECD正會員 加入이 최종적으로 確定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의 29번째 正會員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現政權 出帆이래 본격화되었다. 1993년 7월에 발표된 「新경제 5箇年計劃」에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을 1996년까지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政府內에 OECD加入 準備團이 부서별로 구성되어 OECD측과 2년 여의 기간동안 긴 協議를 벌였다. OECD측과의 分野別 協議過程에서 OECD會員國들은 우리나라의 制度를 OECD의 수준에 맞출 것과 市場自由化를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分野別로 制度를 整備하고 市場自由化 계획을 발표하는 등 OECD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國內産業을 先進化시키는 方向으로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保險分野의 경우 1994년 12월 OECD 保險委員會에서 우리나라의 읍저버 자격을 심사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加入協議가 시작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우리나라의 正會員 資格審査가 있었는데, 정부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國內保險市場의 「自由化計劃」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회원국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이후 1996년 6월의 保險委員會 및 7월의 CMIT/CIME 合同委員會 등에서 기 발표된 保險市場自由化計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후 우리나라를 正會員으로 초청하는 데 있어서 보험분야에는 문제가 없다는 보험위원회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OECD 加入時의 保險分野 協議過程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995년 12월에 발표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자유화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①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과 對外開放 ② 經濟的 需要審査(ENT)制度의 廢止 ③ 國境間去來(cross-border)의 追加許容 ④ 再保險의 早期自由化 ⑤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의 開放 등인데, 이들 조치의 대부분은 과거 UR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自由化 日程이나 내용보다 早期에 시행되거나 확대된 것들이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위와 같은 自由化措置들은 최근 國家間 市場統合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적 환경하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消費者의 權

益增進, 市場原理에 의한 保險社間 건전한 競爭促進, 保險關係制度의 透明性 및 先進國들과의 調和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OECD加入協議 過程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자유화 조치들은 市場保護 측면보다는 市場原理를 產業內에 더 適用한다는 原則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에 익숙한 OECD의 既存 會員國들에 비하여 우리 보험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새로이 조성되는 競爭的 環境에 적용하지 못함으로써 도산하는 기업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험시장 자유화계획의 施行方案과 그에 따른 細部規程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화계획의 波及效果와 구체적인 對應方案 등에 대한 研究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OECD가입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자유화계획의 파급효과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原論的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개괄적인 OECD概要 및 加入協議經過와 가입협의 과정에서의 우리정부와 OECD측과의 協議內容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自由化 措置들이 우리 보험산업에 미칠 影響을 分析하였다. 또한 새로운 保險環境下에서의 우리나라 保險產業의 對應戰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보험시장에서 내국사들은 외국사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OECD회원국들의 상황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 후 對應方案에 대한 개괄적 의견을 제시하였다.